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탄생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촉법)」에 의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개편된다. 제도 개선의 목적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혼입된 포장재 등 재활용 가능품을 분리회수하고, 철저한 선별을 통해 양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하여 자원순환의 고품질화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2013년 11월 22일부터 발효될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의 통합(개정 법률 제27조)

지금까지 의무생산자들은 생산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용기 즉 금속 캔, 유리병, 종이팩, 페트병, 발포 합성수지,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 등에 대해 품목별 재활용협회(공제조합)에 각각 참여약정을 하고 협회는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였다.

개정 법률에서는 의무생산자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통합조합)에 가입하게 되어 중복 가입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조합에서는 재활용의무이행(그린마크제)인증,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홍보·조사·교육·연구 등을 담당할 것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운영될 통합조합의 설립과 기존 협회의 해산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 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방법과 이행실적 인정방식의 개편

그간 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량 이행방법은 자가, 개별 위탁, 공제조합 참여 방법 중 선택하였다. 개정 법률은 의무생산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의무량에 따른 분담금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의무생산자가 자가 또는 개별 위탁 방법으로 회수·재활용한 실적이 환경부 고시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그 양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최 주 섭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상근 부회장

### **EPR 생산자에게 회수 책임의 추가(개정 법률 제16조)**

그간 의무생산자는 제품의 포장용으로 사용한 포장재량(출고량)에 대해 매년 일정목표의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었다. 개정 법률에서는 의무생산자에게 해당 포장재의 '회수' 책임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포장재의 회수·선별량을 늘려서 회수·선별품의 품질 개선과 재생원료의 품질 고급화를 기대하고 있다.

###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신설(개정 법률 제28조의 2와 3)**

통합조합은 의무생산자로부터 의무량에 따라 분담금 수납 등 업무를 하고, 별도의 신설 단체인 유통지원센터에서는 회수·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의 실적에 따라 회수지원금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유통지원센터는 회수·선별재활용실적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실적에 대한 지원금 지급 외에 공제조합을 대행하여 회수·재활용이행 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등 업무를 한다. 아울러 회수선별 및 재생원료의 품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품질등급에 따라 회수선별 및 재활용 지원금을 차등화 할 예정이다.

### **EPR 대상 플라스틱 포장재의 확대**

동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하면 EPR 대상에 기존의 품목 외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가 포함될 것이다. 다만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살충제 및 유독물을 포장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제외된다.

스티로폴 포장재의 경우 신규 대상 포장재는 인형·장난감, 기계·기구류, 임산물, 기타 공산품 등의 스티로폴 재질 포장재가 포함될 것이다.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기준의 신설(개정 법률 제9조의 2)**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친환경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기준을 고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동 기준을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유인책으로 기준 준수 제품과 포장재에 대해 분담금 감액을 검토하고 있다.

### **지자체의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 설치(개정 법률 제13조의 3)**

지자체가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다.

지자체는 포장재의 수거선별 또는 재활용한 것을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 그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회계의 수입은 위 수익금 외에 지자체 재활용센터의 중고물품과 대형폐기물의 판매 수익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사회적기업의 창업지원, 영세수집운반자 지원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및 회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에 사용될 것이다.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도입(개정 법률 제17조의 2)**

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

한 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통합조합에 출고량의 100% 분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그린마크)을 받을 수 있다. 그린마크는 의무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에 표시하게 된다.

### **일부 재활용사업자단체의 이견**

최근 일부 단체가 EPR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내는 분담금이 정부가 정한 재활용 기준비용보다 낮아 재활용사업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감소했다.

둘째, 공제조합이 재활용지원금을 적게 주어 상당한 잉여금을 적립하고 있다. 셋째 신설될 통합공제조합을 독점적 운영하면 재활용사업자에게 불리하니 복수의 공제조합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 **이견에 대한 설명**

신설될 통합조합에 참여 예정인 관계자로서 위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미 이행분에 대해 부과되는 벌과금성 비용이다. 그러나 의무생산자의 분담금은 EPR 대상 포장재별로 재활용하는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조사하여 산정한다.

즉 재활용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재생원료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것에 공제조합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분담금을 정한다. 따라서 분담금이 재활용기준비용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재활용사업자의 수익이 양호한 경우에는 분담금과 지원금을 낮춤으로서 최종 소비자 등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바

람직한 것이다.

둘째, 공제조합의 잉여금은 초기단계(1월부터 4월까지) 회수선별 및 재활용 지원비에 사용될 것이다.

의무생산자가 납입하는 분담금은 4월말에 제출하는 전년도 출고실적을 기준으로 5월부터 징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무생산자는 분담금 납부액의 인하를 원하는 반면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지원비의 인상을 원하게 된다. 따라서 양측 간에 조정은 재활용사업의 수익성 조사를 외부용역하고 이를 근거로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가 동등 수로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적정한 분담금 및 재활용지원비 단가를 결정할 것이다.

셋째 복수조합으로 통합조합을 운용하게 되면 재활용사업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EPR제도 시행 10년 만에 개편된 통합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단수의 공익법인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는 EPR 대상 제품과 포장재의 자원순환사업의 공공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경기변동에 따라 재생원료의 수요와 유통가격의 급락이 있어 관련사업자들의 부침이 심한 반면, 재활용가능품에 대한 소비자의 분리배출과 지자체의 분리수거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익법인은 자원순환사업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것이 예상된다.

새해에는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재활용사업자가 함께 자원순환사회 건설을 위한 책임을 공유하는 자세를 갖기를 기대해 본다. ☑